



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1.4.1>

###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허가서

※ 건축물의 용도/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.

건축구분	신축	허가번호	2018-도시건축과-신축허가-188
건축주	손■■■		
대지위치	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28 - 4		
대지면적	1,675 m <sup>2</sup>		
건축물명		주용도	공동주택(다세대주택)
건축면적	863.84 m <sup>2</sup>	건폐율	51.57 %
연면적 합계	3,916.39 m <sup>2</sup>	용적률	154.64 %
가설건축물 존치기간			

동고유번호	동명칭 및 번호	연면적(m <sup>2</sup> )	동고유번호	동명칭 및 번호	연면적(m <sup>2</sup> )
1	주2동	648.2			
2	주1동	645.64			
3	주3동	648.2			
4	주4동	648.2			
5	부1동	1,326.15			

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서를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8조·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.

2018년 08월 10일

진접읍장

